

[일련번호 : 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행정안전부령 제381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집행내용에 따라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 격려 간담회 비용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총 4회, 380천원 집행하였다.

[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 연번 | 사용일시 | 세부사업 | 건명 | 지출금액(원) |
|----|------------|------|--|---------|
| 1 | 2022-01-07 | | ***** **에 따른 직원 격려 (대상 : ○○과장 외 3명) | 35,000 |
| 2 | 2022-06-14 | | 직원 격려 간담회 비용 지출 (대상 : ○○과장 및 직원 7명) | 80,000 |
| 3 | 2023-07-20 | | **업무 담당자 격려 간담회 비용 지출 (대상 : 구청장 및 **업무 담당자 10명) | 200,000 |
| 4 | 2024-06-10 | | ***** ** 담당자 격려 간식 구입비 지출 | 65,000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2021년 ***** 최종 결과 알림(2022.1.6.)에 따라 2022년 ***** 대비에 대한 방향성 논의 등이 진행되었으나 지출건명의 부적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심의회 운영, ***** 운영, *****서비스 추진, ***** 및 *****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